

각국의 진술조력인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 영국, 북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제도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조 광 훈**

I. 시작하며

근자에 사회지도층의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여기에 2008년에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순이 금년 12월 중 출소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또 한번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성범죄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에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 마다 성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도적으로 손질을 보아야 하느니 하면서 떠들썩하게 만든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적지 않은 상처를 가져다준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 정도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된다. 이러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고서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형사사법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큰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 형사사법절차의 원만하지 못한 진행은 피해자에게 아픔과 상처의 치유의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형사절차상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8.)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II. 우리나라 진술조력인 제도의 필요성과 입법과정, III. 각국의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중, 자. 비교법적 검토)을 새로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과장, 법학박사.

기회는 물론이고 형사사법절차의 실패로 가해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지 못하여 결국에는 형사사법절차의 실패를 초래할 수가 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바로 ‘진술조력인 제도’이다.

진술조력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성폭력 범죄를 당한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아동학대 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들에 대한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의사소통의 특별한 전문가이다.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는 영국의 등록 중개인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영국의 등록 중개인 제도는 북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의 중개인 제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중개인 제도도 이들 나라의 제도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들 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를 상호 비교·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¹⁾ 먼저, 국내에서는 진술조력인 제도의 탄생배경에 관하여 전혀 다루어진 바가 없었으므로 성폭력 범죄의 발생현황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의 필요성과 입법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II). 그리고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 몇 개 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의 개선방향도 고찰해 본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와 유사한 나라가 진술조력의 대상자와 대상범죄가 폭넓게 인정하고 진술조력의 품질유지를 위한 보장책도 마련하고 있는 점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III).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와 정책적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 후(IV), 정리한다(V).

1)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가 영국의 등록 중개인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영국의 등록 중개인 제도에 관한 국내의 소개와 비교·분석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I.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의 필요성과 입법과정

1.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필요성 대두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 범죄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피해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범죄 증가가 제도를 탄생시킨 두드러진 배경이다. 2007~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성폭력 범죄의 발생건수 및 증가율을 보면, 2007년은 14,344건, 2008년은 16,129건, 2009년은 17,377건, 2010년은 20,584건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6년에는 29,357건을 보이고 2017년에는 32,824건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²⁾ 최근 10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발생 추이를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2007년에는 1,055건이었으나 그 후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는 1,270건으로 10년 동안 약 20.3%나 증가하였다. 13~20세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도 2007년에 3,790건에서 2017년에는 8,079건으로 113%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³⁾ 여기에 최근 수년 간 성폭력 범죄피해 장애인의 현황을 보면, 2010년 321명, 2011년 494명, 2012년 656명, 2013년 852명, 2014년 927명으로 전체 성폭력 발생건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비율(%)은 2010년에는 1.6%, 2011년 2.3%, 2012년 2.9%, 2013년 3.0%, 2014년 3.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⁴⁾

아동학대의 발생건수도 2014년에는 10,027건이 발생하였으나 2018년에는 24,604건으로 4년 만에 2배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학대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2018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집계된 전체 신고 접수건수는 총 36,417건으로 전년 대비 약 6.6%가 증가했고, 이 중에서 응급아동학대의 의심사례가 1,187건,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32,345건으로 총 아동학대 의심사

2)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8, 14면.

3) 대검찰청, 앞의 책, 83면.

4)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2017년-2021년)의 방향과 과제, 215면. < 표 4-6 >.

례는 전체 신고건수의 92.1%로 보고되고 있다.⁵⁾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학대 중에서 신체학대는 7,960건, 정서학대는 10,635건, 성 학대 방임 638건, 방임학대는 3,519건으로 보고되고 있다.⁶⁾ 피해아동의 연령은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 24.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피해자의 나이도 만 10~12세가 22.1%, 만 7~9세가 17.3%로 나타났다.⁷⁾ 재 학대 사례도 2,543건으로 2018년 아동학대 사례 24,604건 중에서 10.3%를 차지하고 있고⁸⁾, 2018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경우도 28명이나 되었다.⁹⁾ 사망피해 아동의 연령은 모두 9세 이하였고, 그 중에서 1세 미만은 10명, 1세 8명, 4세, 5세, 7세, 9세가 각각 2명씩이었고, 6세와 8세는 각 1명으로 파악되었다.¹⁰⁾ 이처럼 성폭력 범죄나 아동학대 범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들 범죄에 대한 능동적인 대책도 함께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¹⁾

-
- 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 11면. < <http://www.korea1391.go.kr/new/> ; 최종 접속일 : 2020. 10. 17. > .
 - 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 표 1-3-10 >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의 통계를 재구성하였다. < <http://www.korea1391.go.kr/new/> ; 최종 접속일 : 2020. 10. 17. > .
 - 7)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 19면. < <http://www.korea1391.go.kr/new/> ; 최종 접속일 : 2020. 10. 17. > ; 2019년 7월경부터 2010년 1월 9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지적장애 의붓아들(8세)의 뺨을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신체학대를 가하고, 심지어는 2020년 1월 10일 지적장애 3급의 의붓아들(8세)을 찬물 욕조에 들어가게 한 후, 수 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망하게 한 피해아동의 계모 A모씨(여, 31세)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가해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 (아동학대치사)으로 구속되어 재판으로 넘겨지기도 하였다.
 - 8) 아동권리보장원,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 42면. < <http://www.korea1391.go.kr/new/> ; 최종 접속일 : 2019. 10. 24. > .
 - 9) 가장 최근에는 2020년 6월 1일 계모에게 지속적으로 아동 학대를 당해오던 9세 아동이 여행 가방에서 7시간 넘게 갇혀 있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여 또 다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산 바가 있었다. -여행가방에 갇혀 ‘의식불명’ 9살 아이 끝내 숨져- 2020년 6월 4일자, 한겨레 신문, 이에 대해서 < <http://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947807.html> ; 최종 접속일 : 2020. 10. 10. > .
 - 10) 아동권리보장원,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 62면. < 표 2-3 > 사망사례 피해아동 연령 통계. < <http://www.korea1391.go.kr/new/> ; 최종 접속일 : 2010. 10. 14. > .
 - 11) 2020. 10. 16.경에는 생후 16개월된 아기가 엄마에 의하여 온 몸에 멍이 들어 사망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31861&link=ORI&cooper=NAVER ; 최종 접속일 : 2020. 11. 20. > .

2. 진술조력인 제도의 입법과정

가.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전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가 아동 성폭력에 관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²⁾ 범죄피해자학이 1980년대에 들어서 독립적인 학문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과 권익을 다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어왔지만 정작 아동이나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은 별달리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렇다보니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아동 등에 관한 인권과 권익보호에 관한 연구물들이 나올 리가 만무하였다.¹³⁾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연구물이 늘어나고, 2007년 무렵부터는 장애인에 대한 사법적 지원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0년대 초반을 전·후로 아동 성폭력 범죄가 크게 증가하자 아동·성폭력에 대하여 사회적 문제점과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다수의 연구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국민들도 성폭력 범죄를 강력히 다스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많은 법령이 개정되었다. 한편, 舊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6조 제6항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었으나¹⁴⁾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 함)

12) 우리사회가 성폭력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전북 남원에서 발생한 31세의 김○남씨가 21년 전 9세의 어린 나이에 송○권(당시 35세, 피살당시 55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다가 가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알려져 그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성폭력범죄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천정환, 앞의 책, 107면 참조.

13) 국회도서관, 학술정보 검색사이트(KISS, DBpia)에서 1980-1999년 까지는 ‘아동 성폭력’이라는 단어(키워드)로 검색되는 연구논문(개인파 단체를 불문)은 6건 정도 밖에 검색되지 않았다. < <http://kiss.kstudy.com> >, < <http://dbpia.co.kr> >; 최종 검색일 : 2020. 10. 14. >.

14) 舊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341호 2007. 4. 10. 제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⑥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보호자·변호인·통역인·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서는 ‘진술보조인’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서는 사건관계인들이 언어소통에 장애가 있다면 형사사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도와줄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현행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6조에서는 사법절차의 서비스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 것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6항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국가가 사법절차에서 정상인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력 신청권’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절차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주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접근가능성이나 언어나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 통역사의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았었다. 이 때문에 정신적 장애인들은 자신들에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도 국가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외면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고, 게다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 말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조력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입법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다.

나. 진술조력인 제도의 입법과정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들의 권리의식의 향상과 인권신장으로 피해자들의 권익과 의사가 입법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더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의 일환으로 여성 가족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성폭력 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정책을 적극 펼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10년을 전·후로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빈발하였고 피해아동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적 진실발견과 공소유지에 한계도 수시로 발생하였다. 이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생긴다는 위기감의 확산되고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도 확산되었다. 그러던 중, 2007년 12월 안양에서 발생한 ‘혜진, 예술양 살해사건’, 2008년 안산에서 발생한 ‘조○순 사건’(일명 나영이 사건), 2010년 2월 부산에서 발생한 ‘김○철 사건’, 2011년의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학생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성폭력 범죄’ 등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발생하였다.¹⁵⁾ 이에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들끓었고 정부에서는 2013년 6월 21일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법무부도 2012년 1월 제2차 기본계획(2012~2016)에서 아동 및 장애인의 피해 진술시 임상심리사,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2012년 6월 7일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공감대는 국회에서도 형성되어 유사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한편,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중벌주의만을 불러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국민들의 성난 여론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급속히 전개되어 2012년 10월 4일 제311회 국회 제3차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검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 일부는 특별위원회의 경우 없이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 곧바로 회부되었다. 제1차 법률안 심사소위원회(2012. 10. 17),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2), 제3차 법률안 심사소위원

15)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에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은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장애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논의 과정에서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단초가 된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없다. 다만, 2012년 6월 7일 양재동 엘티 타워에서 법무부 주최로 열린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입법공청회’와 2013년 12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술조력인들 48명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교부하면서 개최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의 의의와 기대 역할’이라는 세미나에서 영화 ‘도가니’의 실제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신○회 검사는 “2006년 도가니 사건이 처음 문제가 됐을 때, 의사소통과 표현이 미숙하고 낮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들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재수사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 <https://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9> ; 최종 접속일 : 2020. 10. 15. >.

회(2012. 11. 5),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4)에서는 위 17개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17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내용을 일부 수정한 대안을 제안하였다.¹⁶⁾ 그리고 제311회 국회 제4차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2012. 11. 19.)에서 법률안 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 위원회 안을 의결하였다.¹⁷⁾ 이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12년 11월 22일 가결되고,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률 제11556호로 2012년 12월 18일 공포하여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진술조력인 제도는 진술조력인 양성에 관한 조항(성폭력 특례법 제35조)만 먼저 시행하고 본격적인 운영은 2013년 12월 19일로 정하였다. 한편, 여성·아동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에서는 도입할 진술조력인 제도를 심의하는 과정과 학계에서는 ① 진술조력인 제도가 다른 피해자나 증인을 지원하는 증인지원관의 역할과 중복되는지 ② 진술조력인들의 양성기관을 법무부로 할 것인지, 여성가족부로 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었다. 또한 진술조력인이 기존 여성가족부의 진술분석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변호사(법률조력인), 증인지원관, 진술분석가 등 유사 전문가가 모두 동원될 수 있다는 점¹⁸⁾, 의사소통에 대한 진술조력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16) 2012년 11월 22일 의안번호 2743,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 개정 법률안(대안)」, 1-3면.

17) 2012년 11월 19일 국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의 회의부터 2012년 11월 22일 제31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원안을 가결까지의 상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조.

18) 제311회 국회(정기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 소위원회), 제4호, 8-11면; 특히 대법원은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진술 관련 전문가, 전문 수사자문위원,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의견조회, 피해자 변호인, 신뢰관계인 등의 절차적 보장과 예산인력의 낭비를 불러오고 재판의 일방 당사자인 법무부(검찰)가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피해자 진술을 왜곡시켜 오히려 진실의 발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반대(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하였었다. 그러다가 제311회 국회 법제사법소위 제2차(2012. 11. 22.) 회의에 참석한 범원행정처차장 권순일은 토론 과정에서 기존의 반대 의견을 철회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제311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호(법안심사 제1(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와 연석회의)소위원회, 제2호, 2012. 11. 22, 27면.

있을 지에 대한 의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진술조력인이 법무부에서 양성된다는 점에 대한 반대의견¹⁹⁾등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조력인 제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첨예한 찬·반 논쟁은 없었다. 그리고 법무부와 여성 가족부는 진술분석가와 진술조력인은 다른 전문가임을 확인하고 진술조력인 제도는 법무부가 관장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고 진술조력인 제도는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014년 9월 29일 부터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도 진술조력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 후 법무부는 매년 10여명의 진술조력인을 신규로 양성하여 해바라기센터에 배치하거나 비상근직으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2020년 10월 까지 총 122명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교부하였고, 그 중에서 상근직은 15명이고 나머지는 비상근직으로 활동하고 있다.²⁰⁾ 2017년에는 민사소송법²¹⁾에 진술조력인 제도와 유사한 ‘진술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에 대한 사법절차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진술조력인 제도는 한계점과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다수의 과제를 안고 있다.

19) 민주당 박법계 의원은 검찰이 관계되어 있는 법무부에서 진술조력인을 양성하면 피해자의 증언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법무부가 진술조력인을 양성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제2호, 2012. 11. 22, 21-26면.

20) 2020. 10. 29. 현재 상근직은 서울북부, 서울중부, 서울남부, 경기북서부, 경기북동부, 경기서부, 경기남부, 광주, 부산, 부산동부, 경남, 울산, 경기, 대구해바라기센터 및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배치되어 있다.

21) 민사소송법 제143조의 2 【진술보조】 ① 질병·장애·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보조인의 자격 및 소송상 지위와 역할, 법원의 허가·요건·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Ⅲ. 각국의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국과 유사제도 시행국

현재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는 영국, 북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4개 국가에 불과하다. 견해에 따라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와 상응하는 제도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심리적·소송보조인 제도는 우리나라의 증인지원관, 신뢰관계인, 보조인제도, 피해자변호사의 역할이 혼합된 전문가 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미국과 이스라엘도 성폭력 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아동조사관 내지는 청소년 수사관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와는 사뭇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일본이나 캐나다도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와 상응하거나 유사한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2. 각국의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 입법례

가. 영국

영국의 등록 중개인 제도²²⁾는 Penny Cooper 교수가 설계하였다.²³⁾ 영국

22) 영국의 등록 중개인 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조광훈, “형사절차상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 29-32면 참조.

23) Penny Cooper 교수는 1990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9년부터는 영국에서 법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목격자 증개자 및 기본규칙 접근방식에 대한 영어모델을 고안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형사사법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는 2003년부터 영국과 북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의 중개인 제도를 설계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2017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전역에서 중개인 제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절차적 공정성, 취약한 증인 및 당사자에 관한 150여 편이 넘는 기사, 서적 및 논문을 발표한 중개인 제도에 핵심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는 University of London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Cooper 교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http://pennycooper.co.uk/> 참조.

의 등록 중개인 제도는 2004년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다가 2008년부터 영국 전역으로 확대·시행되고 있다.²⁴⁾ 영국의 중개인 제도는 등록된 중개인과 등록되지 않은 중개인 제도로 구분된다.²⁵⁾ 영국의 등록 중개인 제도(Witness Intermediary Scheme: WIS)는 1999년 ‘소년 사법 및 형사증거법(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99)’(YJCEA) 제16~17조, 제29~30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제16~17조는 등록 중개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피해자와 증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특별조치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9조 제2항(a)(b)~제30조(a)(b)에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등록 중개인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등록 중개인의 모집·선발·교육은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등록 중개인들에 대한 교육은 런던 City of Law School에서 전문가 증인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²⁶⁾

등록 중개인들은 등록 중개인의 사법절차에 참여에 관한 매뉴얼²⁷⁾에 따라 그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²⁸⁾ 중개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18세 이하의 증인, 정신건강법(Mental Health Act 183)에 따라 분류되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표현이나 의사소통이 부족한 사람들이

24) Ministry of Justice, The Witness Intermediary Scheme -quality assurance board strategy, 2019, p.2.

25) 등록된 중개인은 영국의 연방정부의 법무부에 등록되어 활동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중개인은 등록되지 않은 것에 차이가 있다. 또한 등록된 중개인은 주로 피해자를 진술을 조력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중개인은 주로 피고인을 중개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때로는 피해자가 중개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지만 중개인이 없을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은 중개인을 이용하기도 한다.

26) < <https://www.city.ac.uk/about/schools/law> 최종 접속일 : 2020. 10. 27. >.

27) Ministry of Justice,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은 2008년에 제정한 후 2012년, 2015년, 2018년 8월에 개정하였고, 총 9개 파트와 12개 부속서로 되어 있다. 제1부는 등록 중개인의 행동 및 윤리강령, 제2부는 등록 중개인 제도의 운영사항, 제3부는 등록 중개인의 역할 수행과 절차, 제4부는 법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제5부는 증인에 대한 지원, 제6부는 등록 중개인의 기타 지원, 제7-8부는 증인에 대한 기타 지원 및 보호, 제9부는 추가 정보 등 총 69면로 구성되어 있다.

28) Ministry of Justice,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2019.8., p.5.

다.²⁹⁾ 소년 사법 및 형사증거법 제16조 제1항은 취약한 증인은 중개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제외하고 있다. 2006년 경찰 및 사법법 제47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 대한 특별 조치³⁰⁾을 허용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하지만 검시관 및 사법법 2009의 섹션 104 (2011 년 사법법 (북 아일랜드) 제12조)는 의사소통에 취약한 피고인에게 중개인의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판사가 피고가 중개인의 도움을 받도록 허용하는 경우를 막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피고인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 있기 때문이다.³¹⁾ 따라서 영국은 법관의 재량으로 피고인에 대한 중개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개인이 도움이 필요한지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증인의 연령이나 사회적·문화적 배경, 고용환경, 종교, 장애에 고발인이나 증인이 될 가능성, 증인의 주장, 범죄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³²⁾ 중개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관은 검사와 상의하여 SOCA(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에 연락하여 SOCA에서 피해자에게 가장 적합한 중개인을 연계한다. 등록 중개인들은 통상적으로 대부분은 언어치료 영역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다.³³⁾

이들의 역할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증인들의 의사소통 등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것이다.³⁴⁾ 즉 증인에 대한 의사소

29) 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99 제16조 제1항 (a)-(b), 제2항 (a)-(b); Ministry of Justice, *The Witness Charter: Standards of care for witness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2013, p.4.

30) 특별조치가 곧 등록 중개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조치의 속에 등록 중개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조치를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게 다가온다.

31) < <https://www.theadvocatesgateway.org/intermediaries#england-and-wales-intermediaries-for-victims-and-witnesses-in-criminal-cases> 최종 접속일 : 2020. 11. 1. >.

32) 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99 제17조 제1항, 제2항 (a)-(d), 제3-4항.

33) Penny Cooper, "Ten years of Registered Intermediaries in England and Wales", *The City Law School*, 2012,6., p.1 각주 1.

34) Ministry of Justice,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2019,8.,

통이나 의사표현의 능력을 점검하거나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³⁵⁾하여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공하고 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다.³⁶⁾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의 기본규칙 청문(ground rules hearing)절차에서도 피해자의 효율적인 증언을 위하여 그 절차에 관하여 판사, 변호사, 검사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도 한다.³⁷⁾

영국은 등록 중개인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2004년 이래 2010년 1,206건, 2012년 3,337건으로 2012년 3월까지 5,300건 정도를 지원하였고,³⁸⁾ 2018년 까지 6,391건을 수행³⁹⁾하여 월 평균 약 500~53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⁴⁰⁾ 또한 등록 중개인들의 진술조력의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하여 ‘QAB’(Quality Assurance Board)(품질보증위원회)두고 있다.⁴¹⁾ 영국은 형사 사법절차에서 등록 중개인 제도를 필수적인 제도로 여기고 있다.⁴²⁾ 이와 같

pp.5-6, pp.12-13; Criminal Practice Directions 2015, p.19; Penny Cooper, “Ten years of Registered Intermediaries in England and Wales”, *The City Law School*, 2012.6., p.1; Penny Cooper · David Wurtzel, “Better the second time around? Department of Justice Registered Intermediaries Schemes and lessons from England and Wales”, *NILQ* 65(1), 2014, p.43; Alison Brammer and Penny Cooper, “Still Waiting for a Meeting of Minds: Child Witnesses in the Criminal and Family Justice Systems”, *Criminal Law Review, Issue 12*, 2011.12., p.929.

35) Ministry of Justice,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2019.8., p.14.

36) Ministry of Justice,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2019.8., p.14.

37) Ministry of Justice,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2019.8., pp.21-23.

38) Penny Cooper, “Ten years of Registered Intermediaries in England and Wales”, *The City Law School*, 2012.6., p.2.

39) Ministry of Justice,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2019, p.5; Cooper · Michelle Mattiison, “Intermediaries, vulnerable people and the quality of evidence: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ree versions of the English intermediary model”,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vidence & Proof* Vol 21(4), 2017, p.360; Ministry of Justice, The Witness Intermediary Scheme -ANNUAL REPORT 2018/19, 2019, p.2, p.8.

40) Penny Cooper · Michelle Mattiison, op. cit., p.355.

41) Ministry of Justice, The Witness Intermediary Scheme -quality assurance board strategy, 2019.4.

42) Penny Cooper · Michelle Mattiison, op. cit., p.366.

이 영국의 등록 중개인들의 역할은 우리나라 진술조력인들과 같이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증인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원활한지를 확인하여 경찰관에게 알려주거나 증인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경찰관의 효과적인 질문방법에 관한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⁴³⁾ 다만, 중개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18세 이하로 규정하여 우리나라보다 대상범위가 다소 넓다.⁴⁴⁾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권지향적인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나.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의 중개인 제도⁴⁵⁾는 영국과 대동소이하다.⁴⁶⁾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등록 중개인 제도를 모델로 삼아 2013년 5월 13일부터 18개월 동안 벨파스트(Belfast) 지역에서 피해자, 목격자, 피고인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그 후 전역으로 확대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⁴⁷⁾ 처음에는 크라운 법원의 소관에 속하는 중죄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⁴⁸⁾ 현재는 모든 크라운 치안 판사 및 청소년 법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⁴⁹⁾ 북아일랜드의 등록 중개인 제도의 법적근거는 Criminal Evidence 1999 제17조 및 21BA (5)(6)조이다.⁵⁰⁾ 형사증거법 제17조는 영국의 소년사법 및 형사증거법

43) Ministry of Justice,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2019.8., p.13.

44) Ministry of Justice, Achieving Best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Guidance on interviewing victims and witnesses, and guidance on using special measures-, London, 2011, p.4.

45) 북아일랜드의 등록 중개인 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조광훈, 앞의 논문, 32-34면 참조.

46) 영국에서는 중개인을 'Intermediary'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북아일랜드에서는 'Pilot'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47) Department of Justice, Northern Ireland Registered Intermediaries Schemes Pilot Project POST-PROJECT REVIEW January 2015.1., p.5.

48) Penny Cooper · Michelle Mattiison, op. cit., p.356.

49) 북아일랜드 법무부, 등록된 중개 제도 < <https://www.justice-ni.gov.uk/>; 최종 접속일 : 2020. 10. 4. >.

50) Court Of Judicature, Northern Ireland Procedure The Crown Court (Amendment) Rules (Northern Ireland) No. 82, 2013, 44U(6) (a), p.2; Department of Justice, Northern

제29조와 동일한 적용 범위를 갖고 있다.⁵¹⁾ 형사증거법 제21 BA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 매우 취약한 피의자(용의자)에 대한 증개 또는 보조를 규정하고 있으며⁵²⁾, 지적 장애인은 영국의 정신건강법에 따라 분류되어 진술조력의 대상이 되는 지적장애인 등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영국과 다른 점은 영국은 명문의 규정 없이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에 대하여 피의자(피고인)도 증개인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으나 북아일랜드는 명문으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취약한 피의자나 피고인을 증개 대상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점이다.⁵³⁾ 북아일랜드는 2011년에 북 아일랜드 법률위원회 (NILC)는 아동, 정신 질환, 학습 장애 또는 인격 장애 또는 신체장애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증인을 위해 민사 법원에서 특별 조치를 사용할 것을 권장되기도 한다.⁵⁴⁾

북아일랜드의 증개인들도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의 능력이 떨어지는 증인의 의사소통을 증개 또는 보조하는 것을 핵심 역할로

Ireland Registered Intermediaries Schemes Pilot Project POST-PROJECT REVIEW January 2015.1., p.6.

- 51) 북아일랜드 법무부, 등록된 증개제도 < <https://www.justice-ni.gov.uk/> ; 최종 접속일 : 2020. 10. 4. >.
- 52) 증개인의 도움을 받을 피의자(피고인)는 (i) 피고인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로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는 지적능력 수준이나 사회적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ii) 피고인이 18세 이상이지만 (a) 정신장애를 앓고 있거나 정신건강법 (Mental Health(Northern Ireland) Order 1986) 정신적으로 중대한 장애(손상)가 있는 경우 (b) 피고인이 그러한 이유로 법원에 구두 증인으로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 53) Department of Justice, Northern Ireland Registered Intermediaries Schemes Pilot Project POST-PROJECT REVIEW January 2015.1., pp.5-6; Penny Cooper · David Wurtzel,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 In Search of an Intermediary Scheme for Vulnerable Defendants in England and Wales", *Crim. L. R., Issue*, 2013, pp.1-19; < <https://www.theadvocatesgateway.org/intermediaries#northern-ireland-intermediaries-witnesses-and-defendants-in-criminal-cases> ; 최종 접속일 : 2020. 11. 1. >.
- 54)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Family Law*, p.42, pp.868-870; A Brammer and P Cooper, (2011), 'Still Waiting for a Meetings of Minds : Child Witnesses in the Criminal and Family Justice Systems', *Criminal Law Review, Issue 12*, pp.925-941; < <https://www.theadvocatesgateway.org/intermediaries#northern-ireland-intermediaries-witnesses-and-defendants-in-criminal-cases> 최종 접속일 : 2020. 11. 1. >.

한다.⁵⁵⁾ 중개인들은 의사소통에 관한 전문가들로 일정한 교육과정을 통과하여야 하고 행동강령과 윤리강령도 준수하여야 하며 비밀의무와 중립의무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⁵⁶⁾ 법무부에서 중개인들의 역할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⁵⁷⁾ 을 배포하여 중개인들은 이 매뉴얼에 따라 역할을 수행한다. 북아일랜드의 국민들은 중개인들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중개인들의 역할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⁵⁸⁾ 또한 진술의 중개 또는 보조를 필요로 하는 증인에게 적합한 중개인의 추천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증인의 의사소통의 능력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⁵⁹⁾ 북아일랜드는 2015. 4. 1.~2016. 3. 31. 총 428건의 진술조력을 하였고, 약 70%에 달하는 301건이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었다.⁶⁰⁾ 또한 중개인들의 도움을 받은 주요 대상자들은 학습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이었다고 한다.⁶¹⁾

다.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의 중개인 제도⁶²⁾는 2015년 성폭력 피해 아동들의 2차 피해를 줄이고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입하

55) Penny Cooper · Miichelle Mattiison, op. cit. p.356., p.358.

56) Department of Justice, Northern Ireland Registered Intermediaries Schemes Pilot Project POST-PROJECT REVIEW January 2015.1., p.6.

57) Department of Justice, Northern Ireland Registered Intermediaries Schemes Pilot Project POST-PROJECT REVIEW January 2015.1.(총 35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58) Penny Cooper · Miichelle Mattiison, op. cit., p.356.

59) Penny Cooper · Miichelle Mattiison, op. cit., pp.357-358.

60) Department of Justice, Northern Ireland Registered Intermediaries Schemes Pilot Project Phase II Review. Belfast: Department of Justice, 2015, p.8; 그 이외의 통계자료는 Department of Justice, Northern Ireland Registered Intermediaries Schemes Pilot Project POST-PROJECT REVIEW January 2015, pp.30-32.

61) Department of Justice, Northern Ireland Registered Intermediaries Schemes Pilot Project POST-PROJECT REVIEW January 2015.1., p.8.

62)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의 중개인 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조광훈, 앞의 논문, 34-35면 참조.

였다.⁶³⁾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의 중개인들은 피해아동을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이들을 “children’s champions”로 지칭하기도 한다. 즉 ‘아동의 대변자’로 의사소통 또는 의사표현의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아동의 의사소통 등을 중개 또는 보조하므로 ‘증인의 중개인’으로 불리운다.⁶⁴⁾ 오스트레일리아의 중개인 제도는 영국의 등록 중개인 제도를 모델⁶⁵⁾로 하고 있어 그 역할도 영국의 등록 중개인과 매우 유사하다.⁶⁶⁾ 중개 절차도 영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⁶⁷⁾ 중개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16세 미만의 아동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16세 이상인 사람도 중개인의 서비스를 받을 것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⁶⁸⁾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의 중개인 제도의 법적근거는 「형사절차 개정(아동 성범죄 증거 파일럿)법」〔Criminal Procedure Amendment (Child Sexual Offence Evidence Pilot) Act 2015 NO 46〔NSW〕 제88~90조에 두고 있다. 법원은 중개인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선정이 불필요하다거나 더 나아가 법적정의에 반하거나 피해아동의 이익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⁶⁹⁾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의 중개인들도 공정성·전문성·독립성·비밀유지성 등의 행동강령⁷⁰⁾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⁷¹⁾ 무엇

63) Penny Cooper · Michelle Mattiison, op. cit., pp.356-357.

64) New South Wales 州의 Criminal Procedure Amendment (Child Sexual Offence Evidence Pilot) Act 2015, Division 3 ‘Children’s champions’, 88 Role of children’s champions.

65) Penny Cooper · Michelle Mattiison, op. cit., p.351; NSW Justice, Children’s Champion (Witness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2016, p.14.

66) Penny Cooper · Michelle Mattiison, op. cit., p.353.

67) NSW Justice, Children’s Champion (Witness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2016(총 38면).

68) Criminal Procedure Amendment (Child Sexual Offence Evidence Pilot) Act 2015, 제89조 제3항 (a)-(b).

69) Witness intermediary-Procedural Guidance Manual (updated April 2019) Code of conduct for witness intermediaries, p.13.

70)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의 중개인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은 매뉴얼 7-8면에 27개 항목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중개인들의 행동강령에는 이해상충 회피, 비밀

보다도 이들은 영국, 북아일랜드의 증개인들처럼 성폭력 범죄의 피해아동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원활하도록 피해아동의 진술을 증개 또는 보조하는 것을 핵심 역할로 들 수 있다. 이들 증개인들은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Witness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updated April 2019) (증개인 매뉴얼)」⁷²⁾에 따라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⁷³⁾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에서 증개인 제도가 시행된 후 2016년 4월 4일부터 2017년 5월 31일 까지 751건을 지원하였다.⁷⁴⁾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는 또 하나의 특징은 New South Wales 州 형사소송법 제306 ZK조(7개 조항)~제306 ZL조(7개 조항)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취약한 증인, 피고인 등을 돕기 위한 규정도 두고 있는 점이다.⁷⁵⁾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06 ZK조~306 ZL조는 증개인 제도에 관한 규정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신뢰관계인 제도와 유사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형사소송법 제306 ZK 제1항에서 형사법정에서 16~18세 미만의 취약한 증인들

유지 의무, 증인과 단독으로 만나지 말아야 하며, 사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금지, 법원 판결의 존중,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부정이용금지 등을 담고 있다; Witness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updated April 2019) Code of conduct for witness intermediaries, p.13.

71) NSW Justice, Children’s Champion (Witness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2016, pp.5-6; Criminal Procedure Amendment (Child Sexual Offence Evidence Pilot) Act 2015, 제88조 제1항 (a)-(b); Witness intermediary - Procedural Guidance Manual (updated April 2019) Introduction, 5 행동강령 제1호, 제5호, p.5, p.7.

72) Witness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updated April 2019)(총 44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73) Witness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updated April 2019) Code of conduct for witness intermediaries 행동강령 제4호, p.7.

74) Penny Cooper · Michelle Mattison, op. cit., p.360.

75) New South Wales, Criminal Procedure Act 1986 No 209 제306 ZK조(Vulnerable persons have a right to presence of a support person while giving evidence) - 제306 ZL조 (Vulnerable persons have a right to alternative arrangements for giving evidence when accuse is unrepresented),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 자치정부 홈페이지 < <http://www.legislation.nsw.gov.au> >; 최종 접속일 : 2020. 10. 22. >.

을 위한 보조인(신뢰관계인, 지원자)⁷⁶⁾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개인에 대한 폭행 범죄로 인한 민사소송이나 2013년 피해자 권리 및 지원법에 따라 개인에 대한 폭행 범죄와 관련한 민사 및 행정소송의 절차, 아동 보호금지 명령 신청과 관련되거나 그러한 명령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절차에도 적용된다.⁷⁷⁾ 취약한 증인(16~18세)은 형사소송법의 법정(개인에 대한 폭행범죄로 인한 민사소송 포함)에서는 피고인은 가족, 보호자, 친척,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⁷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통역인을 이용할 수도 있다.⁷⁹⁾ 형사소송절차에서 취약한 증인을 위하여 보조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피고인의 청문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⁸⁰⁾ 법원은 취약한 증인을 위한 보조인(지원자)을 선정함에 취약한 증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형사소송절차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2명 이상의 보조인을 선정할 수도 있다.⁸¹⁾ 하지만 보조인을 선정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⁸²⁾ 그리고 피고인 측 변호인이 의사소통이 취약한 증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비정상적인 질문을 할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제지할 수도 있다.⁸³⁾ 이러한 보조인은 피고인이나 취약한 증인들에게 법적조언 등은 하지 못하며,⁸⁴⁾ 피고인 측은 보조인을 통해서만 증인에게 질문

76) New South Wales, Criminal Procedure Act 1986 No 209 제306 ZK조(Vulnerable persons have a right to presence of a support person while giving evidence)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조인’ 또는 ‘신뢰관계인’과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고, 제306 ZL조(Vulnerable persons have a right to alternative arrangements for giving evidence when accused is unrepresented)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77) 형사소송법 제306 ZK조 제1항 (a)-(e).

78) 형사소송법 제306 ZK조 제2항 (a), 제3항 (a).

79) 형사소송법 제306 ZK조 제3항 (b).

80) 형사소송법 제306 ZK조 제3A항.

81) 형사소송법 제306 ZK조 제4항, 제5항.

82) 형사소송법 제306 ZL조 제5항.

83) Criminal Practice Directions 2015, p.18.

84) 형사소송법 제306 ZL조 제4항.

할 수 있다.⁸⁵⁾ 이처럼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는 피해아동을 위한 중개인 제도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취약한 피고인 등을 위한 보조인(신뢰관계인)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소송절차에 취약한 피고인들의 권익을 도모하고 있다.

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중개인 제도⁸⁶⁾을 영국, 북아일랜드 보다 더 일찍 시행해 오고 있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40~1950년에 범죄로 외상을 입은 아동(정신장애인)들이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중개인 제도를 도입하였다.⁸⁷⁾ 1940년대부터 일부 법원에서 중개인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18세 미만의 증인에 대한 중개인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었다.⁸⁸⁾ 그러다가 1991년 형사소송법 제170A조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1993년 8월 1일부터 전면 · 시행하고 있다.⁸⁹⁾ 1993년부터는 성적학대나 정서적 학대를 당한 어린이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⁹⁰⁾ 초창기에는 18세 미만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2007년 형법 32(Act of 32of 2007) 제68조에 정신적 연령을 추가하여 지적장애인을 포함시켜 그 대상범위를 넓혔다. 중개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8세 미만의 생물학적 · 정신적 연령 미만의 증인이며, 성인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면

85) 형사소송법 제306 ZK조 제3항.

86)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중개인 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조광훈, 앞의 논문, 35-38면 참조.

87) Gert Jonker · Rika Swanzen, "Intermediary services for child witnesses testifying in South African criminal courts", *Sur, Revista Internacional de Derechos Humanos*, Vol.4 no 6 São Paulo 2007, pp.1-2.

88)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무부 홈페이지 < <http://www.justice.gov.za> ; 최종 접속일 : 2020. 10. 7. > Republic of South Africa Justice and Constitutional Development.

89) Criminal Procedure Act 51 of 1997, 제170A (1).

90) Penny Cooper · David Wurtzel, "Better the second time around? Department of Justice Registered Intermediaries Schemes and lessons from England and Wales", *NILQ* 65 (1), 2014. p.44.

중개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⁹¹⁾ 하지만 중개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이 법정에서 증명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도움을 받지 못한다.⁹²⁾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중개인의 역할도 영국, 북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의 New South Wales 州의 등록 중개인들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아 법정에서 피해아동의 진술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것이다.⁹³⁾ 이들 중개인은 검사나 변호인이 신청하고 법원이 임명한다. 법정에서의 아동에 대한 신문은 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드시 중개인을 거쳐야 하므로 중개인을 통역사라고 하기도 한다.⁹⁴⁾ 만일 피해아동이 영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개인이 통역사의 역할까지 수행하기도 한다.⁹⁵⁾ 때로는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증언을 위한 부수적인 활동⁹⁶⁾도 할 수 있다.⁹⁷⁾ 이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중개인들은 피해아동의 의사소통을 원만히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은 물론이고 아동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력과 관찰기술과 성적학대 및 발달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성에 관한 편견이 없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⁹⁸⁾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증언하던 중, 졸리거나 피곤해 하는 경우로 판단

91)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무부 홈페이지 < <http://www.justice.gov.za> ; 최종 접속일 : 2020. 10. 7. > Republic of South Africa Justice and Constitutional Development.

92)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무부 홈페이지 < <http://www.justice.gov.za> ; 최종 접속일 : 2020. 10. 7. > Republic of South Africa Justice and Constitutional Development.

93) Gert Jonker · Rika Swanzen, op. cit., p.2.

94) Kimberly Collins · Natalie Harke r & Georgios A. Antonopoulos, “The Impact of the Registered Intermediary on Adults’ Perceptions of Child Witnesses: Evidence from a Mock Cross Examination”,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volume 23* (2), 2016.5., p.212.

95) R Fambasayi and R Koraan, op. cit., p.21.

96) 여기에는 공판정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재판 중, 피해아동을 위하여 휴정 요청, 피해아동이나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이에 관해서는 R Fambasayi and R Koraan, op. cit., pp.14-19).

97) R Fambasayi and R Koraan, op. cit., p.14, p.19; Gert Jonker · Rika Swanzen, op. cit., p.2; R Fambasayi and R Koraan, op. cit., pp.1-24.

98) H. Combrink & E. Dur-Fitche, “The Child Witness”, *Child Care Worker*, 12(2), The International Child and Youth Care Network, Wisconsin-Milwaukee, 1994. Available

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이 낮잠을 잘 수 있도록 작은 침낭이 제공되기도 한다.⁹⁹⁾ 다만 증개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아동에게 스스로 질문하거나 질문의 의미를 수정 또는 변경하지는 못한다.¹⁰⁰⁾

마. 독일

독일은 2009년 제2차 피해자 권리 개혁법(Gesetz zur Stärkung der Rechte von Verletzten und Zeugen im Strafverfahren vom 29.7. 2009, BGBl. I, 48.)에 토대로 형사소송법(StPO) 제406g조에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 제도¹⁰¹⁾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¹⁰²⁾ 이러한 독일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제도는 엄밀히 보면, 영국, 북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는 아니며 우리나라의 증인지원관 제도, 신뢰관계인 제도가 혼합된 제도에 가깝다.¹⁰³⁾ 독일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 제도는 형사소송

online at (Gert Jonker · Rika Swanzen, op. cit., p.2 재인용).

99)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무부 홈페이지 < <http://www.justice.gov.za> ; 최종 접속일 : 2020. 10. 8. > Republic of South Africa Justice and Constitutional Development.

100) R Fambasayi and R Koraan, op. cit., p.20.

101) 독일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 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조광훈, 앞의 논문, 39-42면 참조.

102) 독일 형사소송법 제406g조 【심리·사회적 절차 동행】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피해자는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은 피해자 신문에 그리고 공판에 피해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2)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의 원칙과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의 자격과 보수에 대한 요구사항은 2015. 12. 21. 형사소송에서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에 관한 법률(연방관보 2,525면, 2,529면)에 따른다. (3) 제397a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규정된 요건 하에 피해자에게 그의 신청에 따라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97a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요건 하에 피해자에게 그의 신청에 따라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을 선정하는 것이 피해자의 특별한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그 선정을 할 수 있다. 그 선정은 피해자에게 무료이다. 선정에는 제142조 제1항을 준용한다. 수사절차에서는 제162조에 따른 관할법원이 정한다. (4)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은 선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가 피해자 신문에 참여하는 것이 심리 목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참여를 금할 수 있다. 그 재판은 신문을 진행하는 사람이 한다; 이 재판에 불복할 수 없다. 기각의 이유는 기록에 기재해야 한다.」

103)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은 증인지원관 제도가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68조 b조에 증인이

법 제406g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되어 2017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형사소송에서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에서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의 지원 대상, 지원 원칙, 자격요건,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¹⁰⁴⁾

독일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 제도는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감이나 불안을 제거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함에 목적이 있고¹⁰⁵⁾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과 같이 의사소통의 ‘중개’와 ‘보조’의 역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들은 ‘피해자의 심리적 케어’를 하는 것에 그 역할의 중심을 두고 있다.¹⁰⁶⁾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들은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시에도 ‘상담(자문)’과 ‘지원’은 분리하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¹⁰⁷⁾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조언이나 사실에 관한 설명도 하지 말아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증언)의 본질을 훼손하지도 말아야 한

조력인을 사용할 수가 있는 제도를 두고는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증인조력인은 증인의 변호사를 말하고, 증인의 증인절차를 전체적으로 증인의 심리적 케어를 도모하는 법원공무원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의 증인지원관에 상응하는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

104)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형사소송에서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 제도의 원칙(제2조 제1항),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의 기능(제2조 제2항),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의 자격 (제3조, 제4조), 보수(제5조), 기타(제7조-11조)등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는 독일 연방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bmjv.de/DE/Themen/OpferschutzUndGewaltpraevention/Prozessbegleitung/Prozessbegleitung_node.html ; 최종 접속일 : 2020. 11. 1. >.

105) 형사소송에서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도 심리·사회적 소송보조는 피해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 및 정보제공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https://www.bmjv.de/DE/Themen/OpferschutzUndGewaltpraevention/Prozessbegleitung/Prozessbegleitung_node.html 최종 접속일 : 2020. 11. 1. >.

106) 형사소송에서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원문이다.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 2 Grundsätze
(1) 1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st eine besondere Form der nicht rechtlichen Begleitung im Strafverfahren für besonders schutzbedürftige Verletzte vor, während und nach der Hauptverhandlung. 2Sieumfasst die Informationsvermittlung sowie die qualifizierte Betreuung und Unterstützung im gesamtenStrafverfahren mit dem Ziel, die individuelle Belastung der Verletzten zu reduzieren und ihre Sekundärviktimisierung zu vermeiden.

107) 형사소송에서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전단.

다.¹⁰⁸⁾ 또한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지도 못한다.¹⁰⁹⁾ 독일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들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정보의 전달, 특별한 상담이나 지원, 피해 아동의 연령 및 발육정도에 상응하는 정보제공, 피해자와 함께 법원 견학,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검토, 피해자에게 적합한 휴식 제공, 피해자가 일상생활(학교, 학원 등)에 복귀하도록 지원, 공판심리가 개시되기 직전에 24시간 전화 대기, 아동 증인(가족이나 친족 포함)에 대한 심리지원, 공판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보호 및 동석, 공판정에서 피해자가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심리지원, 형사절차의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위탁자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 및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¹¹⁰⁾ 이들은 역할 수행에 관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방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 및 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품질개발 및 지원에 관한 매뉴얼¹¹¹⁾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도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는 없고, 단지 2004년에 독일과 유사한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 제도¹¹²⁾을 형사소송법에

108)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하여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은 전문적이고 개인적이며 학제적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제3조 제1항), 사회교육학, 사회사업, 교육학, 심리학 전공의 대학 학위나 일정한 훈련 분야 이수하였을 것이 요구되며(제3조 제2항), 상담능력, 의사소통 및 협력능력, 갈등해소 능력도 갖추어야 하며(제3조 제3항), 학제 간 자격을 위해서는 의학, 심리학, 피해자학, 범죄학 및 법률에 관한 기본지식도 갖추어야 하며(제3조 제4항),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들은 정기적으로 고급 훈련도 받아야 한다(제3조 제5항).

109) 형사소송에서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후단.

110) Fastie, Friesa: Sozialpädagogische Prozessbegleitung für minderjährige verletzte Zeuginnen und Zeugen im Strafverfahren, in Budrich, Opferschutz im Strafverfahren, 2. Aufl., Budrich, 2008, 2., pp.30-238.

111) 연방 심리·사회적 프로세스 지원 eV(BPP)협회 < <http://www.bpp-bundesverband.de/> ; 최종 접속일 : 2020. 10. 17. >.

112) 오스트리아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 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조광훈, 앞의 논문, 42-44면 참조.

마련하였다.¹¹³⁾ 오스트리아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66조 제2항¹¹⁴⁾에 법률조력인 제도¹¹⁵⁾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 제도는 독일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들과 같이 피해자의 ‘심리적 케어’에 역할의 중심이 있을 뿐, 피해자들의 의사소통의 증개 및 보조의 역할은 수행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이들이 담당하는 건 아니고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는 별도의 심리치료사나 전문기관에서 담당한다.¹¹⁶⁾ 그 이외에도 피해자의 권익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른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기도 한다.¹¹⁷⁾ 오스트리아는 민사소송의 목적이 형사소송의 목적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73b조에 따라 피의자나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절차에도 적용되는데, 이 점이 독일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 제도와는 약간 다르다.¹¹⁸⁾ 하지만 형사의 유죄판결이 민사소송절차에서

113) 오스트리아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 제도의 기원에 관하여 Birgitt Haller, Studie zur Prozessbegleitung, Wien, 2007, p.3.

< <https://www.irks.at/legacy/downloads/prozessbegleitung.pdf> ; 최종 접속일 : 2020. 10. 14. >.

114) 형사소송법 제66조 제2항 “제65조 제1호 a목 또는 b목에 기재된 피해자가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와 법률조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개인적 관련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피해자의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와 ‘법률조력’을 제공한다. 성적 완전성을 침해당한 피해자로서 14세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리·사회적 소송보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심리·사회적 소송보조는 관련자의 소송절차에 대한 준비, 소송절차와 결부된 심리적 부담 및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의 신문서 보좌를 내용으로 하고, 법률조력은 변호사에 의한 법적자문과 대리를 내용으로 한다. 연방 법무부는 검증된 적절한 단체에 대하여 계약을 통하여 제65조 제1호 a목 또는 b목에 기재된 피해자에 대하여 법적요건의 충족에 대한 심사를 걸쳐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와 법률조력을 실시할 것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5) 우리나라의 피해자변호사 제도와 유사하지는 않다.

116) Prozessbegleitig für Opfer situativer Gewalt, p.3; Prozessbegleitung für Frauen als Betroffene von Männergewalt und Frauenhande, p.2.

117) Prozessbegleitig für Opfer situativer Gewalt, p.8; Prozessbegleitung für Frauen als Betroffene von Männergewalt und Frauenhandel, p.2.

118) Prozessbegleitig für Opfer situativer Gewalt p.8; Prozessbegleitung für Frauen als Betroffene von Männergewalt und Frauenhandel, p.10; Bundesministerium Verfassung, Reformen, Deregulierung und Justiz, *Tätigkeitsbericht Prozeesbegleitung* (2011-2018),

피해자를 심리·사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다.¹¹⁹⁾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케어는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이 담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적지원은 변호사가 한다.¹²⁰⁾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는 고의에 의한 폭행 또는 협박죄의 피해자, 성폭력 범죄의 모든 피해자와 그의 가족(피해자의 배우자, 동거인, 직계혈족, 형제자매),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동거자, 직계혈족, 형제 또는 자매 또는 증인의 가족 등이 그 대상이다.¹²¹⁾ 제도 시행의 초창기에는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여 나중에는 남성폭력으로부터 여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¹²²⁾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여성 피해자들을 위한 공공 상담실이나 모바일에 의한 지원도 병행된다.¹²³⁾ 오스트리아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들은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준비절차와 형사사법절차에서 필요한 각종 정보의 제공,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의 동행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¹²⁴⁾ 이들은 독일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들의 역할과 매우 흡사하며 우리나라의 증인지원관, 신뢰관계인, 보조인제도,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이 혼합된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하다.

2019.4., p.13.

119) 오스트리아 연방 법무부 홈페이지 < <https://www.justiz.gv.at/home~60.de.html> ; 최종 접속일 : 2020. 10. 6. >.

120) Prozessbegleitug für Opfer situativer Gewalt p.7; Prozessbegleitung für Frauen als Betroffene von Männergewalt und Frauenhandel, p.2.

121) Bundesministerium Verfassung, Reformen, Deregulierung und Justiz, *Tätigkeitsbericht Prozeesbegleitung* 2011-2018), 2019.4., p.9, p.11, p.14.

122) Birgitt Haller, *Studie zur Prozessbegleitung*, Wien, 2007, p.4.

123) Prozessbegleitung für Frauen als Betroffene von Männergewalt und Frauenhandel, p.5.

124) 오스트리아 연방 법무부 홈페이지 < <https://www.justiz.gv.at/home~60.de.html> ; 최종 접속일 : 2020. 10. 17. >.

사. 미국

미국은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는 없다. 다만, ‘국립 아동변호센터’(National Children’s Advocacy Center: NCAC)¹²⁵⁾에 소속되어 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거나 면담하는 아동 면담 전문가 제도¹²⁶⁾를 두고 있다. 이들을 진술조력인으로 보는 견해¹²⁷⁾도 있지만 이들은 피해아동의 진술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역할은 수행하지 않고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피해사실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아동전문 조사관’에 가깝다. 이들은 공판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들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¹²⁸⁾ 이들 중, FBI에 소속된 아동조사 면담관들(Child Forensic interviewers)도 있는데, 이들은 FBI의 피해자 지원국(Office for Victim Assistance: OVA)소속으로 경찰관을 대신하여 피해 아동을 직접 조사하기도 한다.¹²⁹⁾ 이들은 범죄피해 또는 목적으로 인하여 심리적·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한 아동들의 독특한 발달적·정서적 부분을 고려하여 면담을 진행한다.¹³⁰⁾

아.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영국, 북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중개인 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는 없다. 다만, 미국의 아동면담 전문가들과 유사한 1956년에 도입된 ‘youth investigator’(청소년 조사관)¹³¹⁾¹³²⁾제도를 두고 있다. 이들 청소년 조사관들은 피해아동

125) NCAC는 1985년 로버트 E 버트 크래머가 설립한 민간기관이다.

126) 미국의 아동 면담 전문가 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조광훈, 앞의 논문, 44-45면 참조.

127) 이수진·김동혁·김현진·임남연, 「피해자 진술조력-피해자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역할」, 범죄피해자 CARE 전문가 양성사업단 CVCS, 2015, 86면.

128) 이진국·조상제·도종진, 「각국의 피해자 진술조력 제도 연구」, 2013년 정책연구용역, 법원행정처, 2013, 4면.

129) 이수진·김동혁·김현진·임남연, 앞의 책, 86면.

130) 이수진·김동혁·김현진·임남연, 앞의 책, 87-88면.

의 진술을 증개 또는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을 면담또는 조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들과는 그 성격과 역할을 달리한다. 이스라엘의 청소년 수사관들은 주로 14세 이하의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¹³³⁾하며, 14세 이하의 아동학대 및 방치나 심각한 폭력 범죄에서는 피해아동을 조사하기도 한다. 때로는 14세 이하의 성폭력 사건에서 목격자를 조사한다.¹³⁴⁾ 청소년 수사관들은 주로 경찰관, 사회사업가, 교사, 보호관찰소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수사관은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도질문이 허용되며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를 보조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피해아동의 증언의 신빙성을 평가하기도 하며, 조사한 내용은 영상 녹화하여 법정에서 제출하기도 한다.¹³⁵⁾ 피해아동의 법정 증언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불러오거나 그 밖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아동의 증언을 거부하게 하거나¹³⁶⁾ 아동에 대한 피고인측의 반대신문도 중단시킬 수도 있다.¹³⁷⁾ 이 때문에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¹³⁸⁾

자. 비교법적 검토

영국, 북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술조력인 제도, 독일, 오스트리아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 제도, 미국의 아동조사 면담관 제도, 이스라엘의 청소년 수사관 제도를 살펴보았

131) 이를 'youth interrogator'라고 하기도 한다. Penny Cooper · Michelle Mattison, op. cit., p.354.

132)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조광훈, 앞의 논문, 46-47면 참조.

133) Spencer, J. R., & Michael. E. Lamb, *Children and Cross-examination: Time to Change the Rules?*, Oxford; Portland, Or.; Hart Pub, 2012, p.27.

134) 노르웨이도 아동조사 면접관들이 피해아동들에게 기소와 방어에 대하여 질문하고 인터뷰를 녹음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 이에 관한 내용으로는 Kimberly Collins · Natalie Harker & Georgios A. Antonopoulos, op. cit., pp.212-213.

135) Kimberly Collins · Natalie Harker & Georgios A. Antonopoulos, op. cit., p.213.

136) 이수진 · 김동혁 · 김현진 · 임남연, 앞의 책, 82면.

137) 이수진 · 김동혁 · 김현진 · 임남연, 앞의 책, 79-83면.

138) 이수진 · 김동혁 · 김현진 · 임남연, 앞의 책, 84-85면.

다.¹³⁹⁾ 미국의 아동조사관, 이스라엘의 청소년 수사관을 제외한 영국, 북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술조력인 제도는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와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¹⁴⁰⁾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와 흡사한 국가들의 진술조력인(중개인)의 역할과 제도의 운용 모습은 약간 달리 나타나고 있다. 다만, 영국의 진술조력인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북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는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 북아일랜드의 진술조력인 제도는 중개인의 역할, 법률근거, 교육과정도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¹⁴¹⁾¹⁴²⁾ 우리나라와 남아

139) 형사소송법 제116조에 범죄 피해자 참가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은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와 유사한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경시청에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제도를 두면서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수반되는 조치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이 법률에도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나 이와 유사한 관련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일본 법무성 및 경시청 참조 < <http://www.moj.go.jp/> ; 최종 접속일 : 2020. 10. 20 >; 캐나다도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와 유사하거나 상응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미국과 유사한 아동옹호센터(CAC)와 아동 및 청소년 옹호센터(CYAC)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아동 피해자 및 증인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관한 내용으로는 캐나다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justice.gc.ca/> ; 최종 접속일 : 2020. 10. 20 >; 뉴질랜드도 진술조력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과 유사한 통역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통역사에 관한 내용으로는 Henderson, Emily, “Helping communication-impaired defendants and witnesses”, 2016, *New Zealand Law Society*, 2016, < <https://www.lawsociety.org.nz/> ; 최종 접속일 : 2020. 10. 11. >.

140) 지금까지 진술조력인 제도를 다루고 있는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독일, 오스트리아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과 미국의 ‘아동조사 면담관’, 이스라엘의 ‘청소년 수사관’ 제도의 유사 전문가를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에 상응하는 전문가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진술조력인들의 역할과는 상이하므로 이들을 진술조력인으로 보는 것 자체가 큰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으로, 미국은 ‘아동 조사 면담관’으로, 이스라엘은 ‘청소년 수사관’으로 칭하는 것이 타당하다.

141) Penny Cooper · Mattion M, “Children’s Champion”, *Australian Police Journal* 70 (4), 2016, pp.200-203.

142) 이들 3개국의 등록 중개인 제도의 비교·분석한 글로는 Penny Cooper · Michelle Mattison, “Intermediaries, vulnerable people and the quality of evidence: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ree versions of the English intermediary model”,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vidence & Proof* Vol 21(4), 2017, pp.351-370.

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진술조력인 제도의 공통점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이나 장애인의 의사소통의 ‘중개’ 또는 ‘보조’에 핵심적 역할을 두고 있다는 점에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독일, 오스트리아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 제도, 미국의 아동 조사면담관 제도, 이스라엘의 청소년 수사관 제도는 이들 국가의 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¹⁴³⁾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들은 우리나라의 신뢰관계인이나 증인지원관의 역할이나 영국의 증인지원관의 역할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오스트리아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의 관련자(특정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의 소송절차에 대한 준비,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의 해소, 공판 절차에서의 신문 시 증인의 동행 및 보좌 등의 역할이 그러하고, 독일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들의 증인 보호 및 동행, 공판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감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 증인이 공판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원활한 안내하는 역할 등이 그러하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의 역할은 비슷하지만 오스트리아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들의 역할은 민사소송 절차에도 확대되는 경우가 있어 독일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의 역할보다 그 범위가 다소 넓다. 이들 두 나라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들도 공판정에서 증인들의 원활한 증언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해자 증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주요 역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증인지원관이나 신뢰관계인들의 역할에 속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과 우리나라 진술조력인의 뚜렷한 차이는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의 역할의 핵심이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학대의 피해아동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의 원활한 ‘중개’ 또는 ‘보조’를 분명히 하고 있음에 반하여, 독일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들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정보

143) Penny Cooper · Michelle Mattison, op. cit., p.357.

의 증개 및 특별한 상담,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피해자의 ‘심리학적 케어’에 중점을 두고 있고, 오스트리아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들의 역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독일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증인들의 ‘심리적 케어’에 중점을 두고 이와 관련한 포괄적인 역할의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독일의 형사소송에서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항¹⁴⁴⁾이나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 제66조에서는 피해아동의 원활한 ‘증개’ 또는 ‘보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¹⁴⁵⁾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피해자를 위한 심리·사

144) 독일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는 피해자의 개인부담을 줄이고 2차 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절차 전반에 걸쳐 ‘지원’과 ‘정보제공’이 포함된다는 내용과 제2항에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중립성’과 ‘상담’ 및 ‘지원’이 분리된다는 규정은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그러한 중립성 유지를 위하여 피해사실을 ‘상담’을 실시한 소송보조인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소송보조인의 역할과는 분리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여기에서 ‘지원’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동행’(또는 동반, 동석)을 의미하며 지원을 피해자의 진술을 ‘증개’ 또는 ‘보조’하는 의미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독일 연방 정부의 법무부나 각 지방정부의 법무부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는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 제도에 대한 안내문과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 제도를 지원하는 독일 연방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 지원 협회(ev협회)에서 제공하는 심리·사회적 프로세스 지원에 관한 품질표준에도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의 목표는 의사소통이 취약한 피해자의 진술의 증개 또는 보조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심리적 케어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도 독일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의 역할에 의사소통의 증개 또는 보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심리적 케어’를 위한 피해자와 ‘동행’ 또는 ‘동석’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음은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 2 Grundsätze의 원문이다. (2)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st geprägt von Neutralität gegenüber dem Strafverfahren und der Trennung von Beratung und Begleitung. 2Sie umfasst weder die rechtliche Beratung noch die Aufklärung des Sachverhalts und darf nicht zu einer Beeinflussung des Zeugen oder einer Beeinträchtigung der Zeugenaussage führen. 3Der Verletzte ist darüber sowie über das fehlende Zeugnisverweigerungsrecht des psychosozialen Prozessbegleiters von diesem zu Beginn der Prozessbegleitung zu informieren. < https://www.bmjv.de/DE/Themen/OpferschutzUndGewaltpraevention/Prozessbegleitung/PsychPbG.pdf;jsessionid=46943A8C224A3E252E9B68F414BDB7FF.2_cid334?_blob=publicationFile&v=1; 최종 접속일 : 2020. 11. 1. >.

145) 독일 연방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 지원 협회에서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 지원을 위한 품질 표준 가이드나 독일 각 지방정부 법무부에서 소개하는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 제도에 관한 안내에서도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들이 의사소통 능력이 취약한 증인(피해자)를 비롯한 소송관계인들에 대한 진술을 ‘증개’ 또는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회적 소송보조인을 두도록 규정하여 이들 나라의 진술조력인의 권한과 역할은 우리나라의 피해자 변호사, 신뢰관계인, 증인지원관의 권한과 역할이 약간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독일과 오스트리아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들은 ‘심리적 케어’에 중점을 둔 증인들의 원활한 증언을 위한 절차적 안내를 강조¹⁴⁶⁾하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동행’(또는 동반, 동석)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북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술조력인 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의 심리적 케어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들과 의사소통의 취약한 피해자들의 의사소통의 보조 또는 중개하는 전문가들과 그 역할을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의사소통의 ‘중개’ 또는 ‘보조’에 역할의 중심을 두고 있다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 케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들 국가는 피해아동들의 원활한 진술 ‘중개’ 또는 ‘보조’보다는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총괄적 프로그램의 성격이 짙다.

미국의 아동조사 면담관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역할은 진술조력인의 역할보다는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조사관으로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나 아동학대 범죄의 전문수사관과 그 역할이 매우 흡사하다. 이스라엘의 청소년 조사관도 이와 유사한데, 이스라엘 청소년 수사관은 한발 더 나아가 피해아동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 법정증언의 실질적인 허락할 수 있는 권한, 반대신문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도 갖고 있어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의 권한과 역할과는 더욱 거리가 있다. 이스라엘의 청소년 조사관은 진술조력인 이라기보다는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면서 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수사관의 성격에 가깝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 <http://www.bpp-bundesverband.de> ; 최종 접속일 : 2020. 10. 12. >.

146) 피해자 및 증인과의 ‘동행’(Begleitung)이 바로 그러하다.

다. 특히 이들이 피해아동의 증언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진술분석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술조력인도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의 진술조력인(중개인)들의 역할과 매우 유사하지만 공판정에서 공격적인 반대신문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점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피해아동의 인권과 권리보호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진술조력인의 역할이 유사한 영국, 북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의 진술조력인의 역할 범위를 뛰어넘는 권한까지도 행사할 수 있어 진술조력인의 중립의무가 많이 희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¹⁴⁷⁾ 한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술조력인들이 공판정에서 검사나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이의제기 또는 질문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에게 신문사항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수정·삭제권과 유사하다. 한편, 북아일랜드는 진술조력인들의 역할 범위가 유사한 국가들 보다 한발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까지 명문에 규정을 마련하여 진술조력인 제도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상과 같이 영국, 북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술조력인들은 의사소통이 취약한 증인들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의 점검 또는 평가, 진술조력의 필요성에 대한 경찰관에게 전달, 효과적인 조사를 위한 경찰관에 대한 조언, 피해자에 대한 사전평가 후 예비보고서 작성, 조사 후 최종보고서 작성, 공판정에서 증인에 대한 질문방식, 증언실의 환경 및 장치 점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주어진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와 상응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

147)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피해아동 증인의 보호에 중개인들의 역할 중심을 두고 있고,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에서부터 UN아동 권리선언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강조하는 견해로는 R Fambasayi and R Koraan, op. cit., pp.9-12.

의 진술조력인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에도 영국, 북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중개인 제도의 운용방법과 제도의 장점을 적절히 수용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에 맞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각국의 진술조력 품질유지를 위한 제도적 보장

진술조력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등록 중개인들의 진술조력의 품질보증위원회¹⁴⁸⁾을 설치·운용함으로써 등록 중개인들의 진술조력의 품질을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영국의 ‘품질보증위원회’는 등록 중개인에 관한 등록의 규제 및 품질보증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경험을 가진 회원 13명을 분기별로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한다.¹⁴⁹⁾ 이 회의에서는 등록 중개인들의 원활한 역할수행과 최적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중개인들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품질보증위원회는 1. 등록 중개인들을 증원하여 의사소통 또는 의사표현이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와 접근성의 향상을 도모하고 2.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최적의 진술중개를 위한 전문성이 뛰어난 등록 중개인의 서비스의 극대화 3. 등록 중개인의 중개의 품질 및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제도의 개선 4. 품질보증위원회의 새롭고 효과적인 전략목표의 제시 5. 등록 중개인의 활동에 관한 표준 개발, 품질보증, 활동에 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6. 고품질의 중개 서비스를 위한 전략 목표 제시 등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다.¹⁵⁰⁾ 그리고 품질보증위

148) 영국의 품질보증위원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조광훈, 앞의 논문, 206-209면 참조.

149) 품질보증위원회는 전문단체와 그와 관련한 대표, 검찰과 국가범죄수사국(National Crime Agency: NCA)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품질 보증위원회에서는 등록 중개인들의 중개에 관한 품질 평가를 위한 ‘품질보증위원회 전략지침’(총 8면)도 두고 있다. <<http://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ministry-of-justice>; 최종 접속일 : 2020. 10. 23.>.

150) Ministry of Justice, The Witness Intermediary Scheme -quality assurance board strategy, 2019, p.2.

원회의 세부적인 활동의 목표는 등록 중개인들에 대한 채용·교육·인증과 등록 중개인의 진술조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CPD를 통한 품질을 관리한다.¹⁵¹⁾ 또한 등록 중개인들의 최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표준을 제공하기도 하고, 등록 중개인들의 등록의 유지 및 지원하기도 하며 등록 중개인들로 하여금 매뉴얼에 따른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홍보하기도 한다. IRB를 통하여 등록 중개인들의 건의사항을 정책을 반영하기도 하고 중개인들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하기도 한다.¹⁵²⁾ 더 나아가 등록 중개인들의 활동에 제기되는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제기된 불만이 심각한 경우라면 해당 등록 중개인에 관한 불만 사례를 계속 접수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어느 등록 중개인에 대한 불만 사례가 계속하여 접수될 경우, 해당 등록 중개인은 이미 역할을 수행 중인 사안은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는 있지만 품질보증위원회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사안은 맡을 수가 없다. 조사가 끝나면 해당 등록 중개인에 대한 경고, 등록부에 정지 또는 삭제, 등록 중개인에 대한 추가 훈련이나 재훈련, 품질보증위원회의 등록 중개인에 의한 감독, 멘토링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등록 중개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사람은 품질보증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¹⁵³⁾ 이렇듯 영국은 품질보증위원회를 설치하여 등록 중

151) 영국은 등록 중개인들은 CPD 로그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CPD 접속하여 남길 사항은 등록 중개인 이름, 연락처(이메일, 전화) 등록번호, 등록날짜, 지난 12개월 동안 수락된 사례 수와 등록 중개인으로 참여한 일수, 과거에 증인과 대면하여 중개인 역할을 수행한 일수, 증인과 12일 이상 대면역할을 한 경우 그 이유, 현재 활동수준이 향상되고 있는지 표시, NCA에 통보된 계획을 이행하였거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중개인으로 규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증인과 최소 12일을 대면하였다는 증거 ...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Ministry of Justice,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2019.8., pp.58-63.

152) Ministry of Justice, The Witness Intermediary Scheme -quality assurance board strategy, 2019, p.2; Ministry of Justice,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Part 2 -Governance of the Witness Intermediary Scheme", 2019.8., p.8; Ministry of Justice, The Witness Intermediary Scheme -ANNUAL REPORT 2018/19, 2019, p.10.

153) Ministry of Justice,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Part 2 - Governance of the Witness Intermediary Scheme", 2019.8., p.11.

개인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과 중개인 제도가 매우 유사한 북아일랜드는 영국과는 달리 중개인들의 품질보증을 위한 CPD 프로세스는 갖추고 있지 않다. 현재 북아일랜드에서는 영국의 CPD 프로세스에 관한 검토와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¹⁵⁴⁾ 더 나아가 경찰관들과 변호사들의 중개인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¹⁵⁵⁾

IV. 정책적 시사점과 나아갈 방향

1. 진술조력 대상자의 확대 필요성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나 북아일랜드의 중개인 제도는 피고인에게도 중개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개방하여 피고인(피의자)의 권익도 최대한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과 매우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북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중개인들의 도움의 대상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살펴보면,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들이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에 한정하지 않아야 하고 그들이 가해자든,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피해자든 형사사법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술조력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¹⁵⁶⁾¹⁵⁷⁾ 형사사법절차에 관여하고 있으면서도 의사소

154) Department of Justice, Northern Ireland Registered Intermediaries Schemes Pilot Project Phase II Review. Belfast: Department of Justice, 2015, p.27, p.34.

155) Department of Justice, Northern Ireland Registered Intermediaries Schemes Pilot Project Phase II Review. Belfast: Department of Justice, 2015, p.34.

156) 김유근·전영실·탁희성,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및 발전방안 연구」, 2016년도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법무부, 2016, 69-70면.

157) 2020. 10. 14. 국회의원 남인순 외 10인은 13세 미만의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아동학대범죄의

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들에게는 진술조력은 서비스가 아니라 어쩌면 형사사법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실제적 진실의 발견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당연한 요청이고 당연히 도움을 주어야 하는 필수적인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특히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범죄나 아동학대 범죄의 가해자라는 이유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는 참된 인권국가의 모습이 아니다.¹⁵⁸⁾ 더 나아가 의사소통 등이 원활하지 못하여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형사사법절차의 참모습이 아닐 것이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권보장과 실제적 진실발견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형사사법서비스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민사사법절차에서 진술보조인을 두고 있는 점과도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봐서도 그러하다.¹⁵⁹⁾

2. 진술조력 대상범죄의 확대 필요성

진술조력 대상자의 확대 못지않게 진술조력 대상범죄의 확대도 절실히 요구된다.¹⁶⁰⁾ 아니 확대라기보다는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¹⁶¹⁾ 현재 우리나라

피해자만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형행 법규는 매우 불합리하므로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도록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4 및 제294조의 3 신설하자는 입법안(의안번호 : 2104518)을 발의하였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조, 이에 대해서는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D0H0Q9M2E7R1P7J3F2O3E4S7G1K4 < 최종 검색일 : 2020. 10. 23. >.

158) 2020. 7. 15. 진술조력인 없이 자백, 지적장애인 '무죄 판결' 성폭력범죄 벌금형...정식재판에서 '억울함 풀어' "경찰 발달장애인 몰이해, 발달 장애인법 미 준수"경찰이 진술조력인 없이 자백을 받는 등 무리하게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충북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형사단독, 임창현 판사)은 지난 3일 길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된 지적장애인 A씨(25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으로는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715162631528913> < 최종 검색일 : 2020. 10. 23. >.

159) 진술조력 대상자의 범위 확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조광훈, 앞의 논문, 134-147면 참조.

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상으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죄는 성폭력 범죄나 아동학대 범죄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이들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와 의사소통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중범죄 피해(살인, 강도, 강간, 특수상해, 약취유인, 인신매매, 범죄단체 조직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도움이 절실하게 다가올 수 있다.¹⁶²⁾ 이들 범죄의 피해자들은 겉으로는 의사소통 등이 원활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인 스트레스와 PTSD로 인하여 의사소통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상황에 얼마든지 처할 수가 있다. 따라서 대상범죄를 성폭력 범죄나 아동학대 범죄에 국한하여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주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진술조력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여야 한다.

3. 진술조력의 품질유지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가 시행된 지도 수년이 흘렀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활성화 되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진술조력인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진술조력인 제도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제적 진실발견을 도모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진술조력인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160) 진술조력 대상범죄의 확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조광훈, 앞의 논문, 147-152면 참조.

161) 진술조력 대상 범위에 관하여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견해로는 김유근·전영실·탁희성, 앞의 보고서, 69-70면; 박종선,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과 향후 과제”, 「경희법학」 제48권 제4호, 경희법학연구소, 2013, 402면; 김정혜, “진술조력인의 의의와 역할 -성폭력 범죄피해 장애인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6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89면 이하; 법무부·백석대학교, 「진술조력인 역할모델 정립」, 201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013, 65면; 국회여성가족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 주최 공동포럼 자료집, 2016.12., 47면.

162) 조광훈, 앞의 논문, 147-148면.

것이 시급하다.¹⁶³⁾ 따라서 진술조력인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진술조력인 선발과 양성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자격을 갖춘 의사소통의 전문가들이 지원하고 선발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과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¹⁶⁴⁾ 또한 진술조력의 자격을 부여받았더라도 자격유지를 위하여 업무수행의 불성실하거나 업무능력의 부족할 경우에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장치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¹⁶⁵⁾ 특히 영국처럼 진술조력인들의 역할과 활동이 적절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품질보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진술조력의 품질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평가하고 피드백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진술조력인들의 활동과 유의미한 사례도 꾸준히 수집하여 사례집을 발간함으로써 진술조력의 품질유지를 위한 제도적 보장책을 뒷받침하여야 한다.¹⁶⁶⁾

V. 마치며

현재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들의 1차적 임무는 성폭력 범죄나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들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을 도와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함에 있다. 하지만 진술조력의 대상자와 대상범죄가 몇 개의

163) 조광훈, 앞의 논문, 172면.

164) 조광훈, 앞의 논문, 174-180면.

165) 우리나라는 진술조력인들이 진술조력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고 개인별로 몇 건씩 어느 지역 위주로 조력하는지 정도만을 파악하고 있을 뿐 진술조력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진술조력자문단도 성폭력, 아동학대, 법률, 상담분야로 세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진술조력인의 선발과정에 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진술조력인 제도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조언에 응하는 것 이외에 실질적인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66) 조광훈, 앞의 논문, 205-206면.

범죄에 국한되거나 13세 미만의 성폭력 범죄의 피해아동이나 학대 아동범죄의 피해아동에 제한되어 있어 진술조력인 제도가 추구하는 이념이 보편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영국의 등록 중개인 제도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몇 개 국가의 진술조력인 제도를 살펴보다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대상범죄를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또한 대상자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드물다. 근본적으로 진술조력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특별한 전문가라는 점을 인식하고 형사사법절차에 관여하는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 증인이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누구를 불문하고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이나 아동학대 장애인에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정한 실질적인 공평과 인권의 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유근 · 전영실 · 탁희성,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및 발전방안 연구」, 2016
년도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법무부, 2016.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8.

법무부 · 백석대학교, 「진술조력인 역할모델 정립」, 2013년도 법무부 연구용
역 과제 보고서, 2013.

이수진 · 김동혁 · 김현진 · 임낭연, 「피해자 진술조력 -피해자 진술조력인과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역할-」, 범죄피해자 CARE 전문가 양성사업단
CVCS, 2015.

이진국 · 조상제 · 도중진, 「각국의 피해자 진술조력 제도 연구」, 2013년 정
책연구용역, 법원행정처, 2013.

김정혜, “진술조력인의 의의와 역할 -성폭력 범죄피해 장애인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6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박종선,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과 향후과제”, 「경희법학」 제48권 제4호,
경희법학연구소, 2013.

조광훈, “형사절차상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

2. 외국문헌

Alison Brammer and Penny Cooper, “Still Waiting for a Meeting of Minds:
Child Witnesses in the Criminal and Family Justice Systems”,
Criminal Law Review, Issue (12), 2011.

Birgitt Haller, Studie zur Prozessbegleitung, Wien, 2007.

- Bredan M O' Mahony, Rebecca Milne and Kevin Smith, "Investigative interviewing,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and the role of the Registered Intermediary", *Journal of Forensic Practice*, 2018.
- Ceci, Stephen. J., & Bruck, Maggie., "Suggestibility of the Child Witness: A Historical Review and Syn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3 (3), 1993.
- Coughlan & R. Jarman, "Can the intermediary system work for child victims of sexual abuse?", *Families in Society*, vol.83, issue5/6, New York, Alliance for Children & Family, Sep-Dec, 2002.
- Court Of Judicature, Northern Ireland Procedure -The Crown Court(Amendment) Rules- (Northern Ireland) 2013, No 82, 2013.
- Criminal Justice System, *The Witness Charter: Standards of care for witness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2008.
- Criminal Practice Directions* 2015, 2019.
- Department of Justice, Northern Ireland Registered Intermediaries Schemes Pilot Project Phase II Review. Belfast: Department of Justice, 2015.
- Fastie, Friesa: Kinder und Jugendliche als Verletzte von Sexualdelikten, Misshandlung und hässlicher Gewalt auf dem Weg durch das Strafverfahren, in: Friesa Fastie(Hrsg.), *Opferschutz im Strafverfahren*, 2. Aufl., Düsseldorf, 2008.
- Fastie, Friesa: Sozialpädagogische Prozessbegleitung für minderjährige verletzte Zeuginnen und Zeugen im Strafverfahren, in: Fastie(Hrsg.), *Opferschutz im Strafverfahren*, 2. Aufl., Düsseldorf, 2008.
- Gerry, F. and Cooper, Penelope, "Effective participation of vulnerable accused persons: case management, court adaptation and rethinking criminal responsibility", *Journal of Judicial Administration* 26 (4), 2017.
- Gert Jonker · Rika Swanzen, "Intermediary services for child witnesses testifying in South African criminal courts", *Sur, Revista Internacional de Direitos Humanos*, Vol.4 no 6 São Paulo 2007.

- G. B. Melton & S. Limber, “Psychologists Involvement in cases of child maltreatment: Limits of role and expertise”, *American Psychologist*, Vol. 44, No 9, 1989.
- G. H. Bower,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thical principles of psychologists*, *American Psychologist*, Vol 36 (2), 1981.
- Henderson, Emily, “Helping communication-impaired defendants and witnesses”, *New Zealand Law Society*, 2016.
- H. Combrink & E. Dur-Fitche, “The Child Witness”, *Child Care Worker*, 12(2), The International Child and Youth Care Network, Wisconsin-Milwaukee, 1994.
- Jack F, Leoy J and Zajac, “Age-related differences in the free-recall in the free-recall account of child, adolescent, and adult witnesse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8 (1). 2014.
- Kimberly Collins · Natalie Harke r & Georgios A. Antonopoulos, “The Impact of the Registered Intermediary on Adults’ Perceptions of Child Witnesses: Evidence from a Mock Cross Examination”, *European Journal on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volume 23 (2), 2016.
- London, Kamala, Bruck, Maggie, Wright Danial B., & Ceci, Stephen. J, “Review of the contemporary literature on how children report sexual abuse to others: Findings, methodological issues and implications for forensic interviewers”, *Memory*, 16(1), Psychology Press, 2008.
- L. Steven, *Expert Witnesses: Ethics and Professionalism*, 12 *Geo. J. Legal Ethics*, 1999.
- Ministry of Justice, *Achieving Best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Guidance on interviewing victims and witnesses, and guidance on using special measures-*, London, 2011.
- _____, *The Witness Intermediary Scheme -quality assurance*

- board strategy, 2019.
- _____, The Witness Intermediary Scheme -ANNUAL REPORT 2018/19, 2019.
- _____,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Victims and Witness Unit, 2012.
- _____, Victims and Witnesses Unit: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1.62. 1.68. 2012.
- _____, The Registered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United Kingdom, 2019.
- _____, The Witness Charter: Standards of care for witness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2013.
- _____, Achieving Best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Guidance on interviewing victims and witnesses and guidance on using special measures-, London: Great Britain, 2011.
- New South Wales, Criminal Procedure Act 1986 No 209.
- NSW Justice, Children's Champion(Witness Intermediary) Procedural Guidance Manual, 2016.
- Penny Cooper · David Wurtzel, "A Day Late and a Dollar Short: In Search of an Intermediary Scheme for Vulnerable Defendants in England and Wales", *Crim. L. R.*, Issue, 2013.
- _____, "Better the second time around? Department of Justice Registered Intermediaries Schemes and Lessons from England and Wales", *NILQ* 65 (1), 2014.
- Penny Cooper · Mattion M, "Children's Champion", *Australian Police Journal* 70 (4), 2016.
- Penny Cooper · Michelle Mattiison, "Intermediaries, vulnerable people and the quality of evidence: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ree versions of the English intermediary model",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vidence & Proof* Vol 21(4), 2017.

- Penny Cooper · Paula Backen · Ruth Marchant, “Getting to Grips with Ground Rules Hearings: A Checklist for Judges, Advocates and Intermediaries to Promote the Fair Treatment of Vulnerable People in Court”, *Crim. L. R.*, Issue 6 © 2015 Thomson Reuters(Professional) UK Limited, 2015.
- Penny Cooper, “Ten years of Registered Intermediaries in England and Wales”, *The City Law School*, 2012.
- _____, “Speaking when they are spoken to: hearing vulnerable witnesses in care proceedings”, *Child and Family Law Quarterly*, Vol 26, No 2, *Kingston Law School*, 2014.
- _____, “Like ducks to water? Intermediaries for vulnerable witnesses and parties”, *Fam Law*, 2016.
- _____, “Highs and Low: The 4th Intermediary Survey”, *Kingston University London*, 2014.
- Penny Cooper Janet Grace, “Vulnerable patients going to court : a psychiatrist’ s guide to special measures”, *BJPsych Bulletin* 40, 2006.
- Peter B. Ainsworth *Psychology, Law and Eyewitness Testimony*(West Sussex, England : *John Wiley & Sons, Ltd.*, 2002.
- R Fambasayi and R Koraan, “Intermediaries and the inter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Child Witnesses in South Africa”, *PER/PELJ* 21, 2018.
- Spencer, J. R., & Michael. E. Lamb, *Children and Cross-examination: Time to Change the Rules?*, Oxford; Portland, Or.; Hart Pub, 2012.

【국문초록】

각국의 진술조력인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 영국, 북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제도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조 광 훈**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는 영국의 등록 중개인 제도에 근간을 두고 있다. 영국의 등록 중개인 제도는 북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의 중개인 제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이외에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유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중개인 제도가 존재한다. 이들 국가의 중개인 제도는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특히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아동이나 장애인들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들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것에 그 역할의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다. 하지만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심리·사회적 소송보조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그 역할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심리적 케어에 역할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에 상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미국의 아동 면담전문가와 이스라엘의 청소년 수사관도 진술조력인이라기 보다는 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거나 면담하는 아동조사관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형사절차상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8)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II, 우리나라 진술조력인 제도의 필요성과 입법과정, III, 각국의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중, 자, 비교법적 검토)을 새로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과장, 법학박사.

영국과 북아일랜드는 진술조력의 대상에 피고인도 포함시키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New South Wales 州도 16세 이상의 사람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 대상범죄와 대상자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도 진술조력 대상자나 대상범죄에 제한을 두지 말고 보편적인 제도로 운용하여야 하고 진술조력의 품질을 유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장책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진술조력인, 진술중개, 진술보조, 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등록증개인

【ABSTRACT】

Comparative Legal Review and Implications of
Intermediary System of Each Country

- Focusing on the comparison · review of the systems of Britain,
Northern Ireland, Australia, South Africa -

Cho Gwang-hoon*

Intermediary system of Korea is based on the registered intermediary system of Britain. Registered intermediary system of Britain had a profound effect on the intermediary system of Northern Ireland and New South Wales of Australia. In addition to the foregoing, intermediary system which is similar to the role of intermediary in Korea exists in South Africa. Same as the role of intermediary in Korea, intermediary systems of those countries have a key point of role in mediating or assisting communication if children or the disabled who are victimized especially by sexual violence have a difficulty in communication or expression of opinion. However, psychological · social lawsuit assistant system of Germany and Austria is hard to be considered equivalent to our intermediary system as the system gives priority to the role of psychological care without including mediation or assistance of the statement of victims. And experts in interview with children in the US and youth investigators of Israel are also considered an investigator specialized in investigation of or interview with victimized children rather than an intermediary.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hat are operating a system similar to the intermediary system of Korea include defendants in the object of statement assistance, and in New South Wales of Australia, anyone over 16 years old can be included

* Seoul East District Prosecutor's office Chief Tribunal Doctor of Philosophy in Law.

in the object if they have a difficulty in communication or expression of opinion, which indicates that the scope of targeted crime and subjects is wide. Therefore, intermediary system of Korea needs to be operated as an universal system without setting a limit on subjects of statement assistance or targeted crime, and a systematic security measure is considered necessary for promoting improvement and maintenance of the quality of statement assistance.

Keywords : intermediary, statement mediation, statement assistance,
sexual violence, child abuse, registered intermediary

